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4. 4.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4. 4. 17.

기획 재경 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정순옥 의원 등 10명(도하석, 이진환, 손범구, 김장관, 황국주, 남현주, 정창근, 이선주, 박종길)
- 발의일자: 2024. 4. 5.(목)
- 회부일자: 2024. 4. 5.(목)
- 검토기간: 2024. 4. 5.(목) ~ 4. 11.(목)

### 2. 제안이유

- 달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공개대상, 공개시기 및 방법(안 제2조~3조)
-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안 제4조)
- 예산낭비 등의 심사(안 제5조)
- 성과금 지급 및 포상(안 제6조)

##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4. 4. 5. ~ 4. 15.)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및 주민들의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예산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방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관련 제안 사례, 예산낭비 및 시정 요구 사례 등 공개대상을 명시하고,
  - 안 제3조에서는 매년 1회 공개대상 사례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시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우리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

연도별	신청			처리완료				
	소계	신청 건수	재분류받은 건수	소계	재분류 보낸 건수	미접수 건수	미처리 건수	처리완료 건수
2023년	16	13	3	16	2	1	1	12
2022년	6	6	0	6	1	0	0	5
2021년	6	5	1	6	0	0	2	4

- 우리구 예산낭비신고센터 : 2005년부터 구 홈페이지 자체운영
- 2012년 2월부터 예산낭비신고포털 구축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예산낭비신고 통합 운영 중

- 안 제5조에서는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의 경우 성과급 지급이나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및 공유를 통한 재발 방지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 계 법령】

### □ 지방재정법

-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 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